



공인은 실명 가능, 사인은 익명보도

범죄피의사실 보도에서의 피의자 신원 공개

박재선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홍보팀장, 변호사

최근 들어 일반시민의 범죄보도에서 신원을 공개한 사건에 대한 언론중재가 늘고 있으며 언론사, 특히 지역 언론사들이 손해배상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피의자의 신원 공개에 대해 기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언론은 범죄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전모'를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경쟁사보다 한발 빨리 보도하는 것을 중요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부 기자들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진을 치고 밤샘을 하며 피의사실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하고 있다.

형법상 수사기관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한 이유는 피의자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여론의 압박에서 자유로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재판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소추자 측(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게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여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라는 법치주의 기본명제를 손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재판 전에 마구 유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입장에서는 피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데 이용될 위험도 있으며, 언론입장에서는 언론사의 상업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측면이 적지 않다.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을 놓치면 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급속히 감소하게 되므로, 언론은 공소가 제

공적 인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범죄보도의 경우에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익명보도를 하여야 한다. 공적 인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경우에는 범죄 자체의 보도가 공공성이 있다하더라도, 그 혐의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공공성을 인정할 여지가 원칙적으로는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라 하겠다.

기되고 공판기일이 잡히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다보니 수사단계에서 채집한 정보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반대되는 정보 또는 추가정보가 드러나 처음의 일방적인 정보가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언론분쟁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언론사의 특종경쟁 속에서 기사화되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법률 지식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 인정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

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여기서 잠깐, 보도의 ‘공공성’이 가지는 중요한 법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명예훼손법리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①피해자의 특정 ②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표현 ③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다만, 보도가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더라도 보도내용에 ‘공공성과 진실성’ 또는 ‘공공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언론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보도 내용이 ‘공공성’을 갖췄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라 하겠다.

대법원, 익명보도 원칙 확인

공적 인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범죄보도의 경우에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익명보도를 하여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원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익명보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이에 따라 원고 등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 등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서울고등법원은 피의자 및 관계자의 신원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그 범죄와 그 수사에 관하여 알리는 것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범죄보도에 관한 언론의 과업은 객관적인 범죄의 현상과 그에 대한 처벌 및 범죄에 대한 대책의 보도에 국한될 뿐이지 범죄를 탄핵하고 관계인에게 응징을 가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적 인물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경우에는 범죄 자체의 보도가 공공성이 있다하더라도, 그 혐의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공공성을 인정할 여지가 원칙적으로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 하겠다.

사례 : ①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 김정의 검사는 폭행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법조출입기자들이 영장청구 사실을 파악하고 찾아오자 그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의사실이 요약·정리된 자료(이른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러한 취재자료에 기하여 언론일보 신문사의 법조출입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작성하였다.

“지난 11일 강남경찰서는 로데오 주점에서 술에 만취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Y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박 모양(21, 강남구 압구정동)을 체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모양은 당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치근거리자 OO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위 피의자가 후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위 사례에서 위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유죄판결로 확정된 경우

③ 위 신문사의 기사가 다음과 같이 기사를 작성한 경우

“지난 11일 강남경찰서는 술집에서 술에 만취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대학생 A양을 체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당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치근거리자 OO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적 인물의 범죄보도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은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을 명시한 실명보도나 그 초상의 보도가 허용된다.”고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①의 경우 평범한 시민의 범죄보도이므로 익명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범죄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신원공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도의 공공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②의 경우는 보도된 범죄혐의가 유죄판결로 확정되어 보도내용의 진실성에는 문제가 없는 보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민의 범죄보도는 범인의 신원공개를 해서는 안 되므로 ①의 경우와 같이 공공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은 부인되지 않으며, 그 유죄판결로 선언된 자유박탈 이외의 법정되지 않은 처벌은 가할 수 없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언론보도는 억제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③의 경우에는 A양이라고 익명 처리하여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공적 인물은 사진게재도 가능

공적 인물의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 등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비록 일상적인 범

죄라 하더라도 그 혐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주목을 받게 되어 시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아닌 경우, 혐의사실의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범위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첫째로 그 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 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둘째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을 명시한 실명보도나 그 초상의 보도가 허용된다.’고 하여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1996. 2. 27. 선고 95나 24946).

공적 인물은 공직자(선거직이나 선거후보자,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자, 검찰, 경찰, 군 고위 간부 등), 유명인사(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대기업 총수 등) 등을 말한다. ■